



제 18 장

대한변호사협회 구성 및 활동 등



제18장 대한변호사협회 구성 및 활동 등

1. 대한변호사협회 구성

가. 역대 협회장

제45대
(現 협회장, 2009.02.~)



김평우 회장

제31대 ~ 제44대 협회장

제44대
2007.02~2009.02



이진강 회장

제43대
2005.02~2007.02



천기홍 회장

제42대
2003.02~2005.02



박재승 회장

제41대
2001.02~2003.02



정재현 회장

제40대
1999.02~2001.02



김창국 회장

제39대
1997.02~1999.02



함정호 회장

제38대
1995.02~1997.02



김 선 회장

제37대
1993.02~1995.02



이세중 회장

제36대
1991.02~1993.02



김홍수 회장

제35대
1989.02~1991.02



박승서 회장

제34대
1987.02~1989.02



문인구 회장

제33대
1985.02~1987.02



김은호 회장

제32대
1983.02~1985.02



이병용 회장

제31대
1982.05~1983.02



김택현 회장

제16대 ~ 제30대 협회장

제30대
1981.05~1982.05

김두현 회장

제28·29대
1979.05~1981.05

김태청 회장

제27대
1978.05~1979.05

양준모 회장

제26대
1977.05~1978.05

양정수 회장

제25대
1976.05~1977.05

배영호 회장

제24대
1975.05~1976.05

임한경 회장

제23대
1974.05~1975.03

곽명덕 회장

제22대
1973.05~1974.05

고재호 회장

제21대
1972.05~1973.05

김윤근 회장

제20대(보선)
1971.10~1972.05

양윤식 회장

제20대
1971.05~1971.10

배정현 회장

제19대
1970.05~1971.05

홍승만 회장

제18대
1969.05~1970.05

전봉덕 회장

제17대
1968.05~1969.05

이병린 회장

제16대
1967.05~1968.05

신순언 회장

제1대 ~ 제15대 협회장

제15대
1966.05~1967.05

김준원 회장

제14대
1965.05~1966.05

고재호 회장

제13대
1964.05~1965.05

이병린 회장

제12대
1963.06~1964.05

배정현 회장

제11대
1962.06~1963.06

한격만 회장

제10대
1961.06~1962.06

정구영 회장

제9대(보선)
1960.09~1961.06

장후영 회장

제9대
1960.05~1960.08

신태악 회장

제8대
1959.05~1960.05

정구영 회장

제6·7대
1957.05~1959.05

최백순 회장

제4·5대
1955.04~1957.05

김종근 회장

제2·3대
1953.10~1955.04

양대경 회장

제1대(보선)
1953.04~1953.10

장후영 회장

제1대
1952.07~1953.04

최병석 회장

나. 대한변호사협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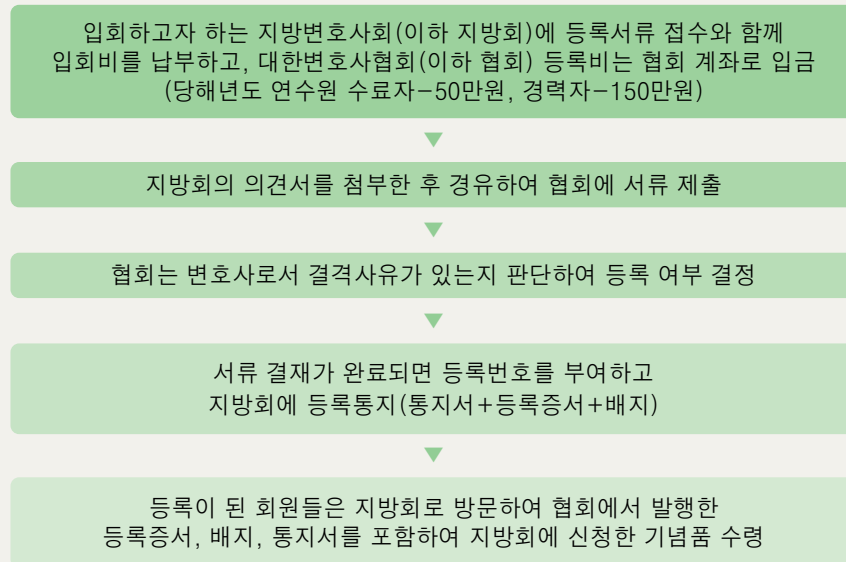
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총무과 T. 02)3476-4002 F. 02)3476-4008 • 기밀 및 보안 • 직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기타 인사 •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 •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수입, 지출 기타 회계 •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기타 재산관리 • 각종 회의의 소집 및 개최 •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제과 T. 02)3476-4001 F. 02)3476-4008 • 각종 법제의 조사 및 연구 • 변호사 제도 및 변호사 사무의 개선 • 각종 법제정책 수립 • 각종 상황탐지 및 대책수립
인권과 T. 02)3476-4003 F. 02)3477-4009 •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인권 관련 정부기구 및 인권단체 활동 모니터링	회원과 T. 02)3476-4004 F. 02)3476-2770~1 •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등록, 신고 및 명부관리 • 변호사의 연수교육 • 회원의 복지후생 • 사법연수생의 지도 • 변호사 사무직원의 지도와 감독 •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홍보과 T. 02)3476-4005 F. 02)3476-1288 • 월간 “인권과정의” 편집 및 간행 • 주간 “대한변협신문” 편집 및 간행 • 협회 홍보책자 간행 • 협회 주요 활동 소개	심사과 T. 02)3476-4006 F. 02)3476-4009 • 진정 및 조사사건의 처리 • 징계조사업무 • 징계청구사건의 징계업무처리 • 징계사례집 간행
사업기획과 T. 02)3476-4045 F. 02)3476-2770~1 • 변호사직역 및 유사직역에 대한 연구 및 대책수립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항 • 관계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국선변호, 당직변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과 T. 02)3476-4060 F. 02)3476-2770~1 • 법률문화의 국제 교류 • 국제 법조 단체와의 협력 •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해외 연수 파견 • 해외 법률가 초청 및 기타 섭외 • 해외 법률 관련 자료 수집

2. 변호사 등록

가. 등록절차

1) 변호사 자격등록, 개업 및 입회 절차



2) 준비서류

사법연수원수료자 또는 공익법무관	경력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기타 공무원 출신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개업신고서	개업신고서	개업신고서	개업신고서	개업신고서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9장)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9장)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9장)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9장)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 9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법시험합격증명서	-	-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증명서 군법무관실무고시합격 증명서	사법시험합격증명서
사법연수원수료증명서	-	-	-	사법연수원수료증명서
-	경력증명서 (법원행정처발급)	경력증명서 (법무부발급)	군경력증명서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진술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법원행정처발급)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법무부발급)	위법행위사실확인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지방변호사회 의견서	지방변호사회 의견서	지방변호사회 의견서	지방변호사회 의견서	지방변호사회 의견서
등록료납부서	등록료납부서	등록료납부서	등록료납부서	등록료납부서
현황자료	현황자료	현황자료	현황자료	현황자료

나. 등록심사

1) 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변호사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하여 등록취소, 등록거부사항에 대하여 심사

2)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변호사법 제10조에 의하여 변호사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법학교수 1명,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됨(단, 변호사, 판사, 검사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자).

3) 등록거부

변호사법 제8조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4) 등록취소

변호사로 등록한 자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협회장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 ② 안건이 회부된 경우 등록심사위원장은 심사기일을 정하여 등록심사위원과 당사자에게 심사기일 통보
- ③ 등록심사위원 중 주임심사위원을 정하여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사 준비
-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등록거부 / 등록취소)

다. 지방변호사회별 등록비 현황

[2009년 말 기준]

변호사회	회원 수	월 회비	입회금		
서울	6,830	50,000원	• 연수원 200만 원	• 경력자 300만 원	※ 공제회 가입시 700만 원
경기북부	206	60,000원	• 연수원 400만 원	• 경력자 600만 원	※ 공제회 없음
인천	299	60,000원	• 연수원 400만 원	• 경력자 500만 원	※ 공제회 없음
경기중앙	511	66,000원	• 500만 원		※ 공제회 250만 원 적립
강원	81	90,000원	• 100만 원		※ 공제회 없음
충북	81	90,000원	• 500만 원		※ 공제회 없음
대전	284	65,000원	• 500만 원		※ 공제회 없음 퇴회시 200만 원 환급
대구	343	60,000원	• 600만 원		※ 퇴회시 480만 원 지급, 사망시 사망공제금 지급
부산	368	60,000원	• 500만 원	• 재입회 100만 원	
울산	95	60,000원	• 600만 원		※ 1/2은 공제회 적립
경남	146	85,000원	• 600만 원		※ 공제회 없음
광주	221	65,000원	• 600만 원		※ 550만 원은 공제회 적립
전북	111	65,000원	• 500만 원		※ 공제회 없음
제주	36	45,000원	• 100만 원		※ 공제회 없음

3. 변호사 징계

가. 징계 현황

연도	징계결정	징계종류				기타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기각	각하
1993	14		9	4	1		
1994	9	1	2	5	1		
1995	5		2	3			
1996	12	2	4	4	2		
1997	11	1	3	7			
1998	144	5	54	73	12		
1999	14		2	11	1	1	
2000	13		3	6	4		
2001	19		5	9	5		
2002	13	1	4	5	3		2
2003	14		5	9		1	2
2004	37		5	28	4	2	3
2005	32		3	22	7	1	1
2006	39		3	30	6		8
2007	29		3	21	5	1	4
2008	31		10	19	2		6
2009	25		6	17	2	3	5
합계	461	10	123	273	55	9	31

연도	지방변호사회별 현황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993	11						1		1			1		
1994	6		1				1	1						
1995	3						2							
1996	7		1			1	2				1			
1997	8		1				1		1					
1998	52		14	28	2		4	5	14	3	7	7	8	
1999	10		1	1			1					1		
2000	9		1						1	1			1	
2001	11			2			2	1		1	1		1	
2002	8		2				1				1		1	
2003	7		1	2			2		1			1		
2004	17	3	3	5			4	3				1	1	
2005	20	2	2			1	1	4	1			1		
2006	20		4	2	5	1	1	1		1		2	2	
2007	19	2	1	1			2	1	1			2		
2008	20	1	1	1			1	1	1	1			4	
2009	17		2	1						2		2	1	
합계	245	8	35	43	7	3	26	17	21	9	10	18	19	

- 변호사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된 1993년 자료부터 수록함.
- 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결격사유에 해당(변호사자격 등록 취소)하여 징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징계개시청구가 되더라도 각하됨.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수 급증과 이에 따른 과잉 시장경쟁으로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다만, 1997년 의정부 등 일부 지역의 변호사들이 사건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그에 대하여 알선·소개비를 지급한 ‘변호사수임비리사건’이 발생하여 1998년 14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고, 당시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도 54명으로 이는 지금까지의 정직 처분 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함.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시작되었고, 윤리위원회 설립근거로 작용함.

참고자료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동년 7월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로서, 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② 정기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변호사법 제89조의4) 및 특정변호사(변호사법 제89조의5)의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있을 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 및 ‘사건브로커’의 출현 및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www.lepcc.or.kr 참조)

나. 징계 절차

사건종류	재청원(재진정) 사건	징계개시신청 사건	인지사건
민원인	소속 지방회장 청원 기각 후, 사건의뢰인 등의 재청원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3항)	지검 검사장, 지방회장, 법조윤리위원장 징계개시신청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	언론보도 등에 의한 인지사건
처리결정	사안 검토 후, 피청원인 및 피징계신청인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경위서 제출 요청, 징계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회부(변호사법 제97의4 제2항)		



조사절차		
위원회	조사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의2)	윤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8조의3)
조사권한	조사위원장이 주임조사위원을 지정하여 변호사 징계혐의 유무 조사	협회장이 조사의뢰한 사건 및 변호사윤리위반 사건 조사
처리결정	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협회장에게 징계혐의유무에 대하여 보고(상임이사회 보고, 심의), 징계혐의 없음 결정 또는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 요청	



징계개시청구 (변호사법 제97조)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구성 (임기 2년)	위원(9인)		변호사 3인, 판사 2인, 검사 2인, 법대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총 18인)		
	예비위원(9인)				
징계종류 (변호사법 제90조)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신청인은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또는 징계청구 기각 결정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4. 2000년 이후 협회 성명서 등 홍보활동

가. 협회 성명서 자료

2010년	1.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한다(2010. 2.18.) 2.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2010. 2. 7.) 3.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2010. 1.19.)
2009년	4. 청소년들에게 ‘법과 사회’를 가르쳐야 한다(2009.12. 8.) 5.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권한 부여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2009.11.25.) 6.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보장과 성범죄자에 대한 원칙적 치료감호처분을 촉구한다(2009.10. 8.) 7.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사찰의혹 제기 관련(2009. 9.23.) 8. “서민은행” 개설을 환영하며(2009. 9.18.) 9.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조치를 우려한다(2009. 8.21.) 10.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2009. 8.19.) 11. 이란의 언론 자유 보장 및 불법 구금 중인 변호사 석방 촉구(2009. 8.11.) 12. 대한변호사협회는 존엄사 공증 관련 입법을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2009. 6.23.) 13. 검찰의 수사제도개혁 촉구(2009. 6.16.) 1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2009. 5.23.) 15. 법원의 단합과 결단을 촉구한다.(2009. 5.21.) 16. 대법원장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엄중경고 및 유감표명 관련(2009. 5.13.) 17.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이 원하는 선진사법제도개혁을 결의하면서(2009. 4.23.) 18.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인권을 보장하고 즉각 석방하라(2009. 4.22.) 19. 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변리사법개정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2009. 4.22.) 20.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2009. 3.16.) 21.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2009. 3. 1.)
2008년	22. 흔들리는 촛불 너무 길 잃은 법치주의를 우려한다(2008. 7. 3.) 23. 민심수습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언(2008. 6. 5.)
2007년	24.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2007.12.17.) 25. 로스쿨 총 입학정원 논쟁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2007.10.24.) 26. 로스쿨법안 통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2007. 7. 4.) 27.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2007. 6.19.) 28. 정부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2007. 5.23.) 29. 로스쿨법의 졸속 입법 가능성을 우려한다(2007. 3. 2.)
2006년	30.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2006.10. 9.) 31. 대법원장의 해명성 발언에 대하여(2006. 9.26.) 32.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2006. 9.21.) 33. 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2006. 8.14.) 34.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추천한다(2006. 8. 7.) 35. 정부는 북한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2006. 7.11.) 36. 한국법학교수회의의 사법제도 파괴 기도를 우려한다(2006. 4.15.)
2005년	37.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한다(2005.12. 9.) 38.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철회하라(2005.10.13.) 39.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법률안을 반대한다(2005. 6.29.) 40. 사개추위는 로스쿨 법률안을 전면 수정하라(2005. 5.18.) 41.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법개혁을 바란다(2005. 5. 3.) 42. 독도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2005. 3.22.)
2004년	43. 불법대선자금수수 범죄는 엄단되어야 한다(2004. 4.10.) 44.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성명서(2004. 3.12.) 45. 탄핵정국을 거두고 도탄의 민생을 추슬러야 한다(2004. 3. 9.)
2003년	46. 불체포특권은 제한되어야 한다(2003.12.31.) 47.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라(2003.12.30) 48. 불안사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2003.11.24.)

2003년	49. SBS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2003. 8.11.) 50. 변호사법개정안 중 공증제도 부분 관련 성명서(2003. 7. 3.) 51. 대법원의 사법보좌관제 재추진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2003. 6. 3.) 52. 청송보호감호소 단식투쟁,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2003. 5.31.) 53. 감치명령 관련 성명서(2003. 5.23.) 54.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서(2003. 3.24.) 55.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3. 3.24.) 56. 사법개혁을 요구한다(2003. 3.14.) 57. 대통령의 대북송금해명 담화에 관하여(2003. 2.14.) 58.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2003. 2. 4.) 59. 검찰개혁등에 관한 변협의 입장(2003. 1. 9.)
2002년	6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2002.12.20.) 61.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을 환영하며(2002.11.15) 62.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피의자 조천훈 사망사건에 관한 성명서(2002.11. 4.) 63.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감증언을 반대하며(2002. 9. 9.) 64. 검찰내부 비리사건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2002. 7. 2.)
2001년	65. 「인권주간」을 맞이한 우리의 인권상황에 관하여(2001.12.12.) 66.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서(2001.11.29.) 67.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에 대한 성명(2001. 7.26.) 68. 경찰력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2001. 4.12.) 69.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통한 신군국주의 부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2001. 3. 1.)
2000년	70. 의약분업실시를 보류하자(2000.11. 7.) 71.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과 공개에 관한 대한변협의 견해(2000. 3.30.)

나. 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행사

2010년	1. 법조 원로들이 모여 사법개혁 논의(2010. 3.24.) 2. 교과부, 대한변협과 법률지원 협약 체결 - 학교 (성)폭력·법교육 강사지원 등 학교 법률지원 참여 (2010. 3.24.) 3. 대한변협,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 구성(2010. 3.11.) 4.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한변협 논평(2010. 2.25.) 5. 北인권 개선 위한 법조 - 인권단체 공조 박차 오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사)북한인권시민연합 양해각서(MOU) 체결(2010. 2.19.) 6. 2011년 로아시아 총회 서울 유치 성공(2010. 2. 2.) 7. 대한변협, 아이티 대지진 관련 성금 모금(2010. 1.19.)
2009년	8.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구금 중이던 한지수씨 가석방, 대한변협 자국민보호활동의 쾌거(2009.12.15.) 9.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기자회견(2009.12.14.) 10.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식" 개최(2009.12. 9.) 11.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 토론회 - 대한변호사협회·국민권익위원회·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 주최(2009.12. 4.) 12. 현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을 환영한다(2009.11.29.) 13. 전문자격사 관련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결코 적지 않다"(2009.11.22.) 14.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2009.11. 2.) 15. 대한변협 주최 특별 세미나 개최 : 외국법제도 "세계 한인 변호사로부터 듣는다"(2009.10.22.) 16. 대한변협·대한의협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공동 세미나 개최 (2009. 9. 4.) 17.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2009. 8.31.) 18. 대한변협, 농촌지역의 법률서비스 갈증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2009. 8.28.) 19. 제4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2009. 8.28.) 20.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62회 변호사연수회·제4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 (2009. 8.27.) 21. 대한변협 창립 57주년을 보내면서(2009. 7.28.) 22. 변호사업계 위기타개 ... 한·일 변호사단체 수장 "머리 맞대" (로스쿨문제,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업무 영역 침해 등)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교류회 7월 18일부터 양일간 열려(2009. 7.17)

2009년	23.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토론회 개최(2009. 7.13.) 24. 제20회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POLA) 회의, 서울 개최(2009. 6.30.) 25. 사법제도 선진화 방안(2009. 6.22.) 26.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 조문(2009. 5.24.) 27. 대한변협,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 환영 논평(2009. 4.21.) 28.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09. 3.11.)
2008년	29. 제39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2008. 8.26.) 30.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 법률가 대회” 개최(2008. 8.11.) 31. 이진강 협회장, 미국변호사협회(ABA) 연례총회 참석(2008. 8. 1.) 32. 이진강 협회장, 태릉 선수촌 방문 및 격려금 전달(2008. 7. 11.) 33. 대한변호사협회 · 미국변호사협회 MOU 체결 및 의견교환회 개최(2008. 7. 4.) 34. 기업 발전과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대한변호사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 주최(2008. 6. 9.)
2007년	35.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 어민에 대한 구호의 손길(2007.12.13.) 36. 한 · 중 · 일 스포츠법 심포지엄 공동 개최(2007.11.19.) 37. 대한변호사협회 · 영국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개최(2007.10.18.) 38. 대한변호사협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정례교류회 - 9월 1일(토)부터 3일(월)까지(2007. 8.31.) 39. 대한변협 임원,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POLA) 회의 참석(2007. 8.13.) 40. 이진강 협회장, 제2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가(2007. 6. 5.) 41.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2007. 5.28.) 42. 로스쿨법 관련 입법청원(2007. 4.12.) 43. 변호사윤리규칙개정특별위원회 설립(2007. 2.26.) 44. 200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및 협회장 당선자 기자회견 개최 안내(2007. 2.26.) 45. 사면권 남발에 대한 비판 논평(2007. 2. 9.) 46. 유신헌법 관련 과거사 처리에 대한 논평(2007. 1.30.) 47. 대통령 개헌 제안에 대한 논평(2007. 1. 9.) 48. 언론의 대법원장 탈세 보도에 대한 논평(2007. 1. 4.)
2006년	49. 제20차 대한변호사협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정례교류회 9월 1일~2일 개최, 일본 동경에서(2006. 9. 1.)
2005년	5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입법에 관한 토론회 개최(2005.11.30.) 51.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 상」 토론회 개최(2005.11.23.) 52. 대한변호사협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정례교류회 - 11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2005.11. 3.) 53. 대한변호사협회 · 중화전국율사협회 교류회 개최 - 북경, 9월 12일(일)부터 16일(목)까지(2005. 9.12.) 54. 변협, 「법조비리신고센터」 설치 ... 25일 현판식 거행(2005. 8.25.) 55.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51회 변호사연수회 · 제3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2005. 8.25.)
2004년	56.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2004. 8.23.) 57. 전 전대통령 방문조사 방침에 대한 논평(2004. 2.18.)
2003년	58.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2003. 8.25.)
2002년	59. <새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서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의 제도적 개혁을 바라면서(2002.11.11.) 60.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2002. 8.19.) 61. 제39회 법의 날(2002. 5. 1.) 62. <새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서한> 검찰의 전면 쇄신과 독립된 위상정립을 바라면서(2002. 1.17.)
2001년	63. 제12 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2001. 7.23.) 64. <새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서한> (2001. 5.30.) 65. 제38회 법의 날 기념사(2001. 5. 2.) 66. “형사재판실무편람” 배포와 관련하여(2001. 3.28.)
2000년	67. 제1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마치며(2000. 8.21.) 68. 최근의 변호사비리 보도 관련 담화문 - 김창국 협회장(2000. 6. 7.)

5. 국제교류 활동

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 서비스의 국제교역 문제, 변호사 업무의 국제화, 급변하는 국제환경 및 법률시장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법조지역의 개방화·전문화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변호사협회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및 법률문화 발전과 법의 지배에 의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 하에 국제 법조단체와의 친선 도모와 법률문화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제 법조단체인 국제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LAWASIA: 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POLA: The Conference of the Presidents of Law Associations in Asia)에는 회원 자격으로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주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9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16차 로아시아(LAWASIA) 총회는 37개국으로부터 1,027명이 참가하여 가장 성공적인 총회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1991년 5월 주최한 제2회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POLA) 역시 21개 해외 법조단체에서 단체장 및 대표가 참석하여 변호사단체의 임무와 의무, 아시아 변호사 단체의 독립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친 중요한 회의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제20회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POLA)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2011년 3월에는 IBA International Arbitration Day Conference(2011. 3. 3.~4.)를, 4월에는 IBA Competition Law Conference(2011. 4. 28.~29.), 10월에는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미국, 호주, 영국 및 일본의 변호사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 중국과는 매년 상호 간 방문하여 정례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홍콩 등의 변호사단체와도 교류하여 국제법조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베트남, 몽골 등의 변호사단체는 한국의 선진 법제 조사를 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여러 차례 예방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재외동포의 인권보호, 다문화 가정 무료 법률상담, 소외계층 지원 등의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법인 세계한인변호사협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의 활동을 후원해 오고 있다.

1) 국제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1) 설립

IBA는 1947년 2월 미국변호사협회의 주창으로 23개국의 법조단체가 참가하여 조직된 각국 법조단체의 비정치적 성격의 연합체로서, 설립 당초부터 국제헌장 카테고리 B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다.

(2) 목적

- ① 각국 법조단체 및 그 회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
- ② 법조단체 및 법조인의 지위 향상
- ③ 법의 각 분야에 걸친 연구 강화
- ④ 세계 인류의 법의 지배에 의한 정의실현 촉구
- ⑤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활동의 촉진 등이며, 주된 활동은 세계 각국 변호사의 일반·인권 활동을 지원하고 총회, 이사회를 포함하여 각종 세미나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3) 국내회원 수 : 157명(2010년 5월 현재)

(4)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예정 회의

① 제14회 IBA 국제 중재의 날(IBA International Arbitration Day)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011년 3월 3일(목) ~ 4일(금) 양일간 제14회 IBA 국제 중재의 날 회의를 개최한다. 본 회의는 다국적 분쟁의 중재와 관련된 법률, 관행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재인 또는 중재에 관심 있는 전 세계 변호사들이 모여 국제 중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재회의로, 중재회의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이다.

② IBA 경쟁법 회의(IBA Competition Law Conference)

IBA Competition Law Conference는 변호사, 사내변호사, 소송변호사, 판사, 정부관계자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분야 종사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정거래 관련 국제회의로 2011년 4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LAWASIA: 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 성격

LAWASIA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각국의 개업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가들의 순수한 비정치적 전문직인 국제 법률가기구로서 회원국 변호사회 대표에 의해 운영되며, 격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오다 2007년 제20회 정기총회 이후부터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1981년 UN 경제·사회부문의 자문지위(Consultative Status)와 세계지적재산권협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설립

1966. 8. 6. ~ 13.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변호사회(Law Council of Australia)가 중심이 되어 ECAFE(ESCAP의 구칭) 회원국 중 18국의 변호사단체 대표 35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조직되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24개 국가의 44개 이상 법조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개인회원은 40여 개 국가 / 1,000여 명).

(3) 목적

- ① 사법행정의 진흥, 인권옹호, 법에 의한 지배의 유지
- ② 법학교육 향상
- ③ 회원국에 대한 법 지식 보급
- ④ 법의 발전과 적합한 분야의 법 통일 촉진
- ⑤ 국제적 이해와 친선 도모
- ⑥ 지역 내 법조인 상호 간 관계와 교류 조장
- ⑦ 지역 내 법조 지위 유지, 향상

(4) 회원국

- 단체회원 : 24개국 44개 단체
- 개인회원 : 50개국 1,500여 명

(5)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11년 LAWASIA 연차 총회(24th LAWASIA Annual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가 참석하여 이 지역 법률 현안, 개발도상국의 인권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다루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LAWASIA 연차 총회를 오는 2011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3) 아시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POLA: The Conference of Presidents of Law Associations of Asia)

(1) 설립

1990년 3월 아시아 지역 변호사단체장 간의 국제적 교류 및 협조를 위해 설립된 비정치적 회의로서 세미나를 통한 법률 정보 교환 및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친목을 도모한다. 한국은 창립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2) 목적

- ① 변호사단체의 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
- ② 평화와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지역 간의 상호 협력
- ③ 법의 지배를 위한 공동 노력
- ④ 변호사의 지위 보장, 법률전문직과 그 활동 범위의 발전 및 지역 변호사협회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휴
- ⑤ 관련 국제기구와 유엔 등 세계기구와의 협력

(3) 회원 자격

- ①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의 대다수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단체의 장의 직에 있는 자
- ② 국제법조단체의 장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주관하는 변호사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옵

저버)으로서 당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4) 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나, 2009년 POLA 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POLA 웹사이트가 개설될 때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시 POLA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www.polanet.org).

4)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변호사들의 국제적 조직체이다. 회원은 아태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IPBA는 동경에서 500명 이상의 아태지역 변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1991년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67개국 2,000여 명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단체로 성장하였다.

(1) 활동

- ① 연례총회 및 회의 개최
- ② 분기별 간행물 발행
- ③ 위원회 운영

(2) 집행부 및 위원회

IPBA의 집행부는 1년 임기의 협회장을 비롯한 13명의 Officer와 지역별 위원회 회장 19인, 확대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IPBA 내에는 비즈니스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17개 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5)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ABA는 1878년 설립된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변호사 조직으로 현재는 4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임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는 2008년 7월 ABA 국제법 섹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총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양 협회의 홍보활동에 협조, ▲양국의 법조동향에 대한 자료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2010년 7월에는 국제법 섹션과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2년 더 연장하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4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법 섹션 스프링 미팅에서 ABA의 신임회장인 Stephen N. Zack을 만나 동년 8월에 개최되는 변호사대회에 연사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BA 회장은 ABA 회장으로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6) 영국사무변호사협회(LSEW: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법률시장개방에 발맞추어 대한변호사협회는 LSEW 측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1) 영국 법률연도 개시의식(Opening of the Legal Year)

영국 법무부가 주관하는 전통적인 영국 법률연도 개시의식 행사에 LSEW가 대한변호사협회 대표를 초청하여 지난 2008년부터 영국 법률연도 개시의식 행사에 참여해오고 있다.

(2) Young Lawyers Forum

2009년 2월 9일(월) 09:00부터 18:00까지 주한영국대사관 후원 하에 대한변호사협회와 LSEW 공동 주최로 2009 Young Lawyers Forum(주제: 국제 법률시장에서 청년변호사의 기회와 도전)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 이귀남 법무부 차관을贵宾으로 초청하고, 4개국(한국, 영국, 일본, 홍콩)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12인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관계자 등 1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 '시장개방, 청년변호사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비공개 진행되었으며, 오후에 '국제법률시장에서 청년변호사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공개 진행되었다. 4개국에서 참가한 청년변호사(Young Lawyer)들은 각국에서 외국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업무 수행함에 있어 생겨나는 애로사항과 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적극적인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3회에 걸쳐 진행되어 온 대한변호사협회와 LSEW와의 교류행사의 성격을 보다 실무적이고 다변화된 형태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7) 홍콩변호사협회(LSHK: Law Society of Hong Kong)

(1) 홍콩 법률연도 개시의식(Opening of the Legal Year)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년부터 홍콩 법률연도 개시의식(Opening of the Legal Year) 행사에 참가하여 홍콩 법조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우호를 다지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의 변호사 단체장과의 미팅을 통해 각국 사법제도 및 법률시장 개방 현황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8)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1)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

세계한인변호사회는 1988년 8월 하순 미국 뉴욕에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문인구 협회장 주도하에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법조인과 법률가들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각국의 법률과 제도의 연구 및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활동 범위를 학술연구 및 교류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의 공동 수행까지 확대하였고, 2007년 말 조직을 공익법인으로 정비한 후에는 재외동포의 인권보호, 다문화가정 무료법률상담, 이주노동자 무료법률자문,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목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 조직 및 회원 간 유기적 협력 강화 방안으로 연차 총회 및 세미나를 홀수 해에는 국내에서, 짝수 해에는 해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창립총회 때 미국 뉴욕주 소재 국제무역법원장이 축하 오찬연설을 하였다. 요지는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항해사가 목표로 삼는 북극성과 같아서 항해사가 북극성을 향하여 배를 진행시켜 북극성 방향으로의 항해할 수는 있어도 북극성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는 인상 깊은 연설이었다(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로 총회에 참석하였던 윤종수 변호사 회고).

(2) 회원 현황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국적 불문) 법조인과 법률가는 세계한인변호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바, 2010년 현재 전체 회원은 1,500여 명이다(국내 회원은 약 500명).

[2007년 IAKL 총회에 참가한 회원의 국가별 분포]

호주	5	독일	8
오스트리아	2	홍콩	3
아르헨티나	1	대한민국	397
벨기에	2	멕시코	1
브라질	6	뉴질랜드	4
캐나다	11	싱가포르	1
중국	7	영국	1
인도네시아	2	미국	276
일본	26	우즈베키스탄	1

9) 일본변호사연합회(JFBA: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대한변호사협회는 한·일 양국의 법률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변호사단체 간의 우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부터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정례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양 협회 대표단이 매년 번갈아 상대 협회를 방문하여 양국 법조계의 관심 분야 및 주요 사법 현안을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정례교류회 개최 현황]

순서	주관	기간	주제
제1차	대한변협	1987.09.07.(월) ~ 09.09.(수)	—
제2차	일변연	1988.11.01.(화) ~ 11.05.(토)	—
제3차	대한변협	1989.10.12.(목) ~ 10.14.(토)	—
제4차	일변연	1990.11.01.(목) ~ 11.03.(토)	—
제5차	대한변협	1991.11.24.(일) ~ 11.26.(화)	—
제6차	일변연	1992.10.26.(월) ~ 10.28.(수)	—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개관 — 한국 변호사공증제도
제7차	대한변협	1993.12.06.(월) ~ 12.08.(수)	—
제8차	일변연	1994.11.24.(목) ~ 11.27.(일)	—
제9차	대한변협	1995.12.16.(토) ~ 12.18.(월)	—
제10차	일변연	1996.08.31.(토) ~ 09.02.(월)	— 법조인구문제

순서	주관	기간	주제
제11차	대한변협	1997.09.27.(토) ~ 09.29.(월)	- 사법시험 제도와 법조인 양성교육 - 법조 양성제도 개혁의 경과와 현상 - 한국에서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하여 - 법무서비스 개방
제12차	일변연	1998.09.07.(월) ~ 09.09.(수)	- 외국변호사 문제에 관하여 - 법률사무소의 법인화 입법
제13차	대한변협	1999.10.17.(일) ~ 10.19.(화)	- 한국의 사법개혁 소개 - 일본의 사법제도와 개혁
제14차	일변연	2000.09.08.(금) ~ 09.10.(일)	- 일본의 외국변호사 제도와 법률사무의 국제적 규제완화의 동향 - 한국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관한 분석
제15차	대한변협	2001.09.02.(일) ~ 09.04.(화)	- 변호사회 의무 가입 문제 - 변호사공익활동의 의무화 - 변호사법인 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계획 - 법률전문직의 규제 완화
제16차	일변연	2002.09.14.(토) ~ 09.16.(월)	- 한국변호사의 반부패 활동 - 법조인구 - 법조양성문제 - 게이트 키퍼 문제
제17차	대한변협	2003.11.03.(월) ~ 11.05.(수)	- 법관 임용방법의 다양화 - 재판원 제도
제18차	일변연	2004.12.03.(금) ~ 12.05.(일)	- 한국에서의 로스쿨 도입 - 일본에서의 로스쿨 운영 실태
제19차	대한변협	2005.11.03.(목) ~ 11.05.(토)	- 형사소송법 개정 현황 - 상법 개정 현황 - 변호사 대량 증원 문제
제20차	일변연	2006.09.01.(금) ~ 09.03.(일)	- 한국의 영상녹화조사 제도 - 한국에서의 외국법자문사의 규제 및 관리 - 일본에서의 체포·구류와 조사 실상에 대하여 - 일본의 외국법사무변호사 제도 -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
제21차	대한변협	2007.09.01.(토) ~ 09.03.(월)	- 보석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피고인의 신체구속 - 법률시장 개방, 외국법자문사의 규제 및 관리
제22차	일변연	2008.09.19.(금) ~ 09.21.(일)	-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시행상황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피고인 변호방법 - 배심원의 비밀유지의무 - 일본의 재판원 제도에 대하여 - 재판원 재판 실시 후의 변호활동의 형태 - 재판원 수비의무에 대하여
제23차	대한변협	2009.07.18.(토) ~ 07.19.(일)	- 로스쿨 도입에 따른 문제 및 개선 방안 - 유사 법조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 영역 침해
제24차	일변연	2010.09.17.(금) ~ 09.18.(토)	- 청년변호사의 고용불황 등 그 문제와 대책 - 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현안과 쟁점 - 법조인 양성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0) 중화전국율사협회(ACLA: All China Lawyers Association)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더불어 주요 외국 변호사단체로서 중화전국율사협회와 1996년부터 정례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래 현황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정례교류회 개최 현황]

순서	주관	기간	주제
제1차	중국율협	1996.10.30.(수) ~ 11.02.(토)	- 대한변협과 중국율협 간의 우호협조협약서 조인
제2차	대한변협	1997.05.21.(목) ~ 05.23.(토)	-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
제3차	중국율협	1998.10.05.(월) ~ 10.08.(목)	- 외자도입에 관한 양국 변호사의 역할
제4차	대한변협	1999.08.25.(수) ~ 08.27.(금)	- 시장경제와 법률구조
제5차	중국율협	2000.05.04.(목) ~ 05.07.(일)	- 변호사법의 변천과 최근 개정 내용 - 한·중 양국 변호사제도의 비교
제6차	대한변협	2001.05.16.(수) ~ 05.18.(금)	- WTO 체제와 법률시장 개방 - WTO 가입 후 변호사의 도전과 기회
제7차	중국율협	2002.05.14.(화) ~ 05.16.(목)	- 한·중 반덤핑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 반덤핑 응소 중 변호사의 역할
제8차	대한변협	2003.10.28.(화) ~ 10.30.(목)	-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관계 - 중국 변호사 관리에서의 정부기관과 변호사협회의 관계
제9차	중국율협	2004.09.12.(일) ~ 09.16.(목)	- 한국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윤리 - 율사직업(執業)행위규범에 대한 해석
제10차	대한변협	2005.09.21.(수) ~ 09.23.(금)	- '공동법률사무소'의 법적 형태와 경영 관리 - 중국 율사사무소의 현황과 발전 추세
제11차	중국율협	2006.05.28.(일) ~ 05.30.(화)	- 형사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변호사의 역할 - 미성년자 인권보호 관련 법제 - 청소년 인권이 문제되는 경우와 인권보호대책 - 미성년 보호를 위한 중국 변호사의 참여 모색
제12차	대한변협	2007.11.26.(월) ~ 11.28.(수)	- 한국노동법 개관 - 중화인민공화국노동합동법 반포·실시 후 재화 외국투자 기업의 노동관리가 직면하게 될 법률문제
제13차	중국율협	2008.06.12.(목) ~ 06.13.(금)	- '반독점법' 시행에서의 문제 : 중·한 양국 반독점법 및 시행 관련 -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연혁 및 시행경과와 향후 시행 방안에 관하여
제14차	대한변협	2010.06.17.(목) ~ 06.18.(금)	- 최근 사법제도의 경향

11)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해외 장학 연수

(1) 일본 영리더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화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회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문부와 학성이 주관하는 1년 과정의 '일본 영리더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현재 9회를 맞이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협회 소속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발하여 세계적인 법률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영국 법률연수 프로그램(International Lawyers Program)

대한변호사협회는 영국사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협회 소속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발하여 6개월 과정으로 영국에서 법률연수를 받는 '영국 법률연수 프로그램(International Lawyers Program)'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였다. 다만, 영국 측의 재정 상황으로 2010년 프로그램은 미정인 상황이다.

나. 지방변호사회

1) 서울지방변호사회

교류대상	시작년도	최근 교류 일자	예정 교류회 일정
일본 제2동경	1989	2008.10.27.	2010.10.29.
중국 북경	1992	2010.05.12.	2년 뒤
일본 오사카	1993	2008.10.13.	2010.06.21.
베트남	2006	2008.01.06.	미정
러시아 모스크바	2007	2008.07.09.	미정
태국	2007	2009.07.06.	미정
독일 베를린	2008	2009.11.06.	2010.11월 중
타이페이	1983	2008.11.24.	2011

2)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1) 교류대상 및 개시일

- 몽골변호사협회 : 2005. 6. 24. (교류협정 체결일)
(교류협정 요지 : 양국의 법률정보 교환 및 노동이나 사업을 하는 한국인과 몽골인에게 법적 지원을 하기로 함)
- 일본 삿포로변호사회 : 2008. 12. 8. (교류협정 체결일)
(교류협정 요지 : 양국의 법률문화 및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교환 방문하여 세미나 개최)

(2) 몽골변호사협회와의 교류 현황

순서	교류일자	내용
제1차	2005.06.23.~28.	몽골변호사협회에서 실시 ※몽골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법원, 울란바타르시법원(항소심), 울란바타르대학 예방
제2차	2006.07.02.~07.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하여 토론
제3차	2007.06.14.~19.	몽골변호사협회에서 실시 ※세미나 주제 : 양국의 형사사법제도
제4차	2007.11.06.~13.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세미나 주제 : 배심원제도
제5차	2009.07.03.~07.	몽골변호사협회에서 실시 ※양국의 법제에 대하여 토론
제6차	2010.05.26.~31.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세미나 주제 : 한국의 법정 외 조정과 소송 외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규정 몽골의 법조인 양성 및 사법제도, 몽골의 부동산 취득 및 이용 관계

(3) 일본 삿포로변호사회와의 교류 현황

순서	교류일자	내용
제1차	2008.12.08.	삿포로변호사회에서 실시 ※세미나 주제 :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로스쿨제도
제2차	2009.08.28.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세미나 주제 : 법조인구문제, 변호사조정제도
제3차	2010.08.30.	삿포로변호사회에서 실시 ※세미나 주제 : 경제적 양극화와 벗어날 수 없는 빈곤 문제

3) 인천지방법변호사회

(1) 일본 사이타마변호사회와의 교류 현황

순서	교류일자	방문인원(명)	세미나 주제 / 교류내용
1차 방한	2005.02.21.~22.	4	• 국제교류 협정서체결
	2005.09.02.~04.	10	
	2006.03.20.~23.	3	• 헌법과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1차 방일	2006.04.18.~19.	2	• 회장취임식 축하 방일
	2006.11.23.~26.	8	• 일본의 로스쿨
	2007.11.22.~24.	18	• 변호사 수 증원 문제 • 수사기관 신문시 영상 녹화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2차 방일	2008.10.24.~26.	18	• 한국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 • 현대 부부갈등 원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시도 •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 • 국민참여재판 6개월의 현황 및 평가
3차 방한	2009.10.31.~11.03.	16	• 로스쿨문제에 대하여 • 사이타마변호사회의 『적정한 변호사 인구증가에 관한 결의』 • 사법시험 합격자 연 1000명으로, 사이타마변호사회 결의의 경과와 의의 • 재판원재판 실행판결 25건 구형 80% 변화 없어 호출 후보 90% 출석 • 한국의 법조 인구

(2) 중국 천진율사협회와의 교류 현황

순서	교류일자	방문인원(명)	세미나 주제 / 교류내용
1차 방중	1993.03.21.~	6	• 중국 천진율사협회와 자매결연(자매결연합의서)
1차 방한	1994.10.12.~16.	5	
2차 방중	1995.10.02.~06.	5	• 법률토론
2차 방한	1996.11.04.~08.	6	• 변호사의 대국민 봉사활동
3차 방중	1997.05.10.~14.	6	• 양국의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3차 방한	1999.09.06.~11.	7	• 변호사협회 업무관리 및 업무지도 (협회 구조와 변호사자격취득 및 각 위원회 활동)
4차 방중	2000.10.08.~12.	5	• 한국과 중국의 법제도에 관한 소개 • 중국의 부동산 권리관계 •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시 법인 설립절차 및 과실송금 문제 (이익의 본국유출 및 투자원본 회수에 대한 법적장치)
4차 방한	2001.12.03.~07.	6	• 한국 변호사제도 및 변호사 현황 소개 • 변호사회의 역할 및 변호사의 직업윤리,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교육 및 방법 • 중·한 양국 투자발전 전망, 양국 간 무역왕래 투자 환경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5차 방중	2002.09.08.~12.	6	

순서	교류일자	방문인원(명)	세미나 주제 / 교류내용
5차 방한	2003.12.09.~13.	6	• 천진율사협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교류확대방안 • 한국 형사변호의 기본제도 • 한국 민사소송의 거증제도 • 한국 변호사의 직역확대 현황
6차 방중	2004.10.12.~16.	10	• 민사사건의 사법적 처리절차(소제기부터 집행까지) • 중·한 변호사들의 업무협조 방안
천진포럼	2005.11.03.~05.	4	
6차 방한	2006.02.21.~25.	6	• 한국·중국 변호사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7차 방중	2006.10.26.~29.	6	•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천진율사회 간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
7차 방한	2009.06.19.~24.	8	• 형사사건 변론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 여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특별보호규정 여부 및 운용실태 • 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8차 방중	2009.11.13.~15.	12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제도 개요 및 현상

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류 국가명	교류 단체명	교류회 시작년도	활동 현황
중국	요녕성율사협회	1994	단절
중국	광둥성율사협회	2002	유지 중이나 활발한 교류 활동 없음
일본	요코하마변호사회	2003	• 2003.12. 요코하마변호사회 방문하여 자매결연 합의 • 매 격년으로 양회 교환 방문하여 교류회 개최 • 매년 세미나 및 축구대회 개최 • 2010.10.29. 수원에서 제8회 교류회 개최 예정
미국	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회	2010	• 2010.08. 본회 회장단이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회 방문하여 상호교류협약 체결 • 2010.10.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회 회장이 본회 방문하여 지속적 교류를 위한 구체적 협약내용 논의 예정

5) 충북지방변호사회

(1) 국제교류 대상 및 개시일

- 일본 미야자키현변호사회 : 2009. 6. 12. 정식 교류합의서 체결

(2) 교류 현황

교류일자	활동 현황
2003	미야자키현 변호사회, 충북회와 국제교류 의사 전달
2004.08.	미야자키현 변호사회 2인 본회 방문
2006.03.	충북회 4인 미야자키현 방문
2006.10.	미야자키현 변호사 3인 충북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2008.10.	미야자키현 변호사 3인 충북회 창립 52주년 기념식 참석
2009.06.12.	정식 교류합의서 체결 (일본 미야자키현 변호사회관) <주제> 충북회 : 국민참여재판 제도, 미야자키현회 : 로스쿨 제도
2010.04.04.~06.	본회 회원 11인 미야자키현 방문하여 교류회 개최 <주제> 충북회 : 영상녹화 제도, 미야자키현회 : 재판원 재판 경험보고

6) 대전지방변호사회

교류 국가명	교류 단체명	교류회 시작년도	활동 현황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변호사회	1996.05.14.	현재 중단된 상태
중국	길림성 조선족연변자치주 을사협회	2004.08.08.	상호 교환방문
일본	토치기현 변호사회	2009.10.30.	자매결연 추진 중

7) 대구지방변호사회

(1) 국제교류 대상 및 개시일

-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 : 1998. 5. 8.

(2) 교류 현황

순서	교류일자	방문인원(명)	내용
1차 방한	1998.10.23.~10.25.	11	- 우리 회 방문 및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검찰청 예방 - 연구발표 : 二國 則昭 변호사
1차 방일	1999.11.27.~11.30.	15	- 히로시마변호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 - 세미나 개최 * 한국측 : 한국의 법무법인 * 일본측 : 국선번호에 관하여
2차 방한	2000.11.03.~11.06.	29	- 히로시마변호사회 특별사건 소개 - 『형무소소송』 - 세미나 개최 * 일본측 발표 : 소비자금융의 홍수와 개인파산 * 한국측 발표 :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제도의 적절한 운용방안 -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기념 친선축구시합 개최

순서	교류일자	방문인원(명)	내용
2차 방일	2001.10.05.~10.08.	33	• 공동세미나 주제 : 『재일 외국인의 법적지위』 * 한국측 : 화교의 법적 지위 및 문제점 * 일본측 : 재일교포 관련 • 특별보고 : 히로시마변호사회의 평화문제에 대한 노력 • 친선촉구시합 개최
3차 방한	2002.11.01.~11.04.	18	• 친선촉구시합 개최 • 공동세미나 주제 : 『한국과 일본의 사법개혁에 관한 세미나』 * 한국측 : 한국에서의 사법제도 추진 개황 * 일본측 : 일본의 사법개혁에 관해서 (로스쿨 제도 창설을 중심으로)
3차 방일	2003.11.07.~11.10.	33	• 공동세미나 주제 : 『형사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 • 특별보고 : 재일재한 미군 범죄자의 수사문제 보고 • 친선촉구시합 개최
4차 방한	2004.09.09.~09.12.	25	• 공동세미나 주제 :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 한국측 : 한국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소비자피해의 구제 * 일본측 : 일본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소비자피해의 구제 • 특별보고 * 한국측 : 소년사건 관련 통계자료 발표 * 일본측 : 소년사건에 관련된 변호내용 발표 • 친선촉구시합 개최
4차 방일	2005.09.23.~09.26.	23	• 공동세미나 주제 : 『로스쿨 문제』 * 한국측 : 한국의 법조인선발 · 양성방법의 모색과 개혁 * 일본측 : 일본의 법과대학원에 관하여 • 친선촉구시합 개최
5차 방한	2006.09.28.~09.30.	21	• 공동세미나 주제 : 『한 · 일 변호사 사무소 운영실태』 * 한국측 :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실태 * 일본측 : 일본 및 히로시마의 변호사 사무소 운영에 관한 보고 • 『한 · 일 변호사 사무소의 운영실태』 좌담회 • 친선촉구시합 개최
5차 방일	2007.05.03.~05.06.	23	• 대구시-히로시마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하여 방문 •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행사 참가
6차 방한	2007.09.25.~09.27. (교류 10주년)		• 공동세미나 : 『교류 10년간의 회고와 전망』 * 한국측 : 대구와 히로시마변호사회의 우호교류 1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일본측 : 대구와 히로시마변호사회의 교류 10년 • 친선촉구시합 • 교류 10주년 기념식 개최
6차 방일	2009.10.29.~11.01.	34	• 세미나 개최 * 한국측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 일본측 : 일본의 재판원 제도에 대하여 • 친선촉구시합 개최

8) 부산지방변호사회

(1) 일본과의 교류 현황

교류일자		내용
자매결연	1990.03.03.	• 변호사회관에서 자매결연 조인식
자매결연	1990.03.24.	• 후쿠오카현변호사회관에서 자매결연 조인식
방일	1991.06.06.	• 양회 교류에 관한 실무협의 • 자유토론 :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방일	1991.11.02.	• 큐슈변호사회연합회 정기대회 및 기념 symposium 참석 • 북강현변호사회 초청 • 주제 : 재일 외국인의 인권문제
방한	1991.11.05.	• 큐슈변호사회연합회 회원 본회 내방 • 자유토론
방일	1992.05.01.	• 자유토론 • 간담회
방한	1992.06.19	• 큐슈변호사회연합회의 정기대회 기념 symposium 자료수집차 내방 (주임변호사 부산회 내방) • 주제 : 전후처리, 소주제 -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당사자인 Lee Ok Bun 할머니, Kim Bok Ja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Yoon Jung Ok, 현대사연구가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Hong Soon Kyun 씨 등과 대담)
방한	1992.09.25.	• 자유토론
방일	1992.10.23.~25.	• 큐슈변호사회연합회 정기대회 및 기념 symposium 참석
방한	1993.05.20.	• 후쿠오카변호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방한	1993.07.02.	• 후쿠오카변호사회의 신임회장 황목방일씨 등 임원 7명과 구주변호사회연합회의 청목 행남 국제위원 등 3명이 신임 인사차 내방
방일	1994.06.03.	• 토론회 주제 ① 대한민국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제도에 관한 소개 ② 법률시장 개방문제
방한	1994.08.26.	• 토론회 주제 ① 회원의 공제 · 복지후생 제도 ② 법률부조 제도 ③ 법무법인 제도
방일	1995.06.26.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② 당직변호사 제도
방한	1995.06.30.	• golf
방한	1995.11.03.	• 토론회 주제 ① 일본에서의 법조 양성제도 개혁론의 현상에 대하여 ② 법률부조의 개혁
방일	1996.05.24.	• 토론회 주제 : 한국의 집중심리방식
방한	1996.09.12.	• 토론회 주제 : 당직변호사 제도
방일	1997.06.06.	• 토론회 주제 ① 인신구속 제도에 관하여 ②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방한	1997.11.07.	• 토론회 주제 ① 신 민사소송법 ② 동성동본금혼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하여

교류일자		내용
방한	1998.06.05.	• 토론회 주제 ① 양국의 법조양성 제도 현황 소개 ②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설립 · 운영 소개 ③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소개
방일	1999.05.28.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개정상법 ② 일본의 사법개혁 동향
방한	1999.08.06.	• 교류 10주년기념행사 협의
방한	1999.11.12.~13.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 위원회별 간담회 <인권위, 교육위, 환경위, 국제위, 부인반> • 토론회 주제 ① 인권위 – 인권침해 구제의 현상에 대하여 – 여성보호를 위한 활동 ② 국제위 – 외국인법률상담에 대하여 ③ 환경위 – 쓰레기문제의 현상에 대하여 – 식수오염원에 대한 법률구조 소송건의 소개 ④ 교육위 : 자유토론 ⑤ 부인반 : 전통 한과에 대한 설명 · 시식회
방일	2000.06.02.~05.	• 기념식
방한	2001.03.19.	• 토론회 주제 ① 일본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로스쿨 문제의 현황 ② 변호사광고의 해금에 대하여 ③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신 민사소송 심리방식
방한	2002.02.22.	• 토론회 주제 : 기업 · 개인의 도산처리 수속의 관여
방한	2002.09.09.	• 토론회 주제 : 최신 일본 사법개혁 사정
방일	2002.10.18.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에서의 금리규제 ② 가정내폭력의 방지 관련 법규
방한	2003.06.27.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신 민사소송법(집중심리)의 운용현황 ② 일본의 공설변호사사무소 ③ 한국에서의 변호사 과소(지역적 편재) 문제
방일	2003.10.02.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법무서비스 시장개방과 대책 ② 한국의 법률구조공단 활동 ③ 일본의 재판관 제도 개혁
방한	2004.08.30.	• 토론회 주제 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제도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② 일본의 최신 사법개혁 사정
방일	2004.12.03.	• 토론회 주제 ① 개인채무자 회생제도에 관하여 ② 개인회생수속의 개요에 관하여 ③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

교류일자		내용
방한	2005.07.18.	• 토론회 주제 ① 변호인 참여수사와 녹음·녹화의 현실 ② 후쿠오카의 법과대학원의 개요 및 변호사회의 연휴태세의 실정과 그 문제점
방일	2005.11.04.	• 토론회 주제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그 몇 가지 획기적인 변화에 관하여 ② 대한민국 공증제도 개설 ③ 일본의 재판원 제도
방한	2006.07.17.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② Gate keeper 제도에 대한 입법화 저지활동의 보고서 및 결의서
방일	2006.11.16.	• 토론회 주제 『일·한 사법제도와 변해가는 변호사상』 - 한결같은 교류를 위하여 -
방한	2007.06.25.	• 토론회 주제 ① 조사의 가시화의 실상 및 배심제의 도입, 그 기준과 모의재판의 실시상황 등 ② 고금리 문제와 후쿠오카변호사회의 최근의 대처
방일	2007.10.19.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로스쿨 제도 및 향후 과제 ②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제
방한	2008.07.07.	• 토론회 주제 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② 소송 외 사건에 대한 업무수행 현황,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일본변호사의 구체적인 대처사례
방일	2008.11.07.	• 토론회 주제 ①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 규율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간략한 소개 ②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방한	2009.07.10.	• 토론회 주제 ① 변호사급증시대의 변호사의 재판 외 업무 ② 재판 외 업무에 관하여
방일	2010.06.11.	• 토론회 주제 : 향후 한·일 간의 교류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고찰

(2) 중국 청도율사협회와의 교류 현황

순서	교류일자	장소	내용
1	2006.11.13.	청도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협정 조인식
2	2007.12.09.	부산회	① 한국 변호사 제도 개황과 업무환경 ②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청도시율사협회와의 업무협조방안
3	2008.10.10.	청도회	중국 청도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법철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9) 울산지방변호사회

(1) 교류대상 및 개시일

- 일본 사가현변호사회 : 2003. 11. 21.

(2) 교류 현황

- 사가현변호사회와의 교류는 2003. 8.경 사가현변호사회로부터 교류희망타진이 있었고, 그 후 2003. 1. 21. 사가현변호사회 회원 21명이 방한, 2004. 4. 23. 본회 회원 14명이 사가현변호사회를 방문하는 등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국제교류 진행 중

10) 경남지방변호사회

(1) 교류대상 및 개시일

- 일본 구마모토현변호사회 : 2004. 3. 26.

(2) 교류 현황

- 격년제 상호방문(회원 및 가족)
- 매년 방문하는 변호사회가 주제발표

11) 광주지방변호사회

(1) 교류대상 및 개시일

- 중국 절강성율사협회 : 2003. 10. 1.(2007년 이후 잠정중단 상태)
- 일본 아이치현변호사회 : 2008. 11. 5.

(2) 중국 절강성율사협회와의 교류 현황

교류일자	주요사업 실시 현황
2002.12.05.	문형철 회장 외 20명의 회원이 절강성율사협회 방문, 격년제 교류에 합의
2003.10.01.	김응열 회장 외 19명의 회원이 절강성율사협회 방문, 교류합의서 조인
2005.08.05.	2박 3일 일정으로 주이빈 절강성율사협회 방문단 대표 및 오광렬 금화시율사회장 등 5명의 임원 방한
2006.04.07.	이정희 회장 외 32명의 방문단 절강성율사협회 방문 -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세미나 개최

(3) 일본 아이치현변호사회와의 교류 현황

교류일자	내용
2008.07.07.	아이치현변호사회에 교류요청 친서 전달
2008.07.21.	제2부회장 강행옥 변호사가 특사자격으로 아이치현변호사회 방문, 격년제로 상호교류하기로 합의
2008.11.05.	국중돈 회장 외 회원 15명, 가족 11명, 사무국장 등 27명이 아이치현변호사회 방문
2009.07.19.	사카이 국제특별위원장 외 7명의 변호사들이 방한

12) 전북지방변호사회

(1) 교류대상 및 개시일

- 중국 산둥성율사협회 : 1993. 3. 26.
-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 : 2009. 1. 16.

(2)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와의 교류 현황

교류일자	내용
2008.11.18.	2008년 제5차 이사회에서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와 교류 논의 -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에서 본회 방문 결정 논의
2009.01.16.~01.18.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 본회 방한 * 양측의 변호사회 소개 및 앞으로의 교류에 관한 협의
2010.02.18.~02.21.	본회, 일본 가고시마현변호사회 방일 * 정식교류협력체결(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약 등) * 한국, 일본 양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중국 산둥성율사협회와의 교류 현황

교류일자	내용
1993.03.21.~03.31.	중국 산둥성 방문
1993.11.14.~11.18.	중국 산둥성율사협회 임원진 도상영 부회장 외 5명 방한 4박 5일 한국체류 - 전주관광호텔 5층 그릴 상오 10시, '우호협약' 체결
1995.07.23.~07.31.	중국 산둥성 본회 임원진 8박 9일 공식 방문 ① 원활한 상호 통신을 위해 상설 팩스 개설 ② 매년 양측 상호 방문 ③ 상호 회원 연수 긍정적 추진 ④ 법률적 자료 수시 교환 등 모두 4개항에 합의
1996.09.09.~09.14.	중국 산둥성율사협회 임원진 방한
1999.09.23.~09.27.	허장협 회장 외 12명 중국 청도, 계림 방문
2001.11.20.~11.26.	중국 산둥성율사협회 임원진 방한
2002.09.19.~09.23.	중국 산둥성율사협회 방문
2008.09.25.~09.28.	중국 산둥성율사협회 방문

13) 제주지방변호사회

(1) 교류대상 및 개시일

- 일본 오이타현변호사회 : 2010. 2. 27.

(2) 교류 현황

- 교류협정 전 사전 미팅 실시
(오이타현변호사회가 본회 방문 1차 : 2009. 3. 20., 2차 : 2009. 9. 4.)
- 2010. 2. 27. 본회가 오이타현변호사회를 방문하여 교류협정 체결
- 2년에 1회 정도 상대국을 방문, 공통되는 법률문제 등의 테마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연구와 토론 및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기로 함.

6. 회원 간 친선활동

가. 대한변호사협회

1)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

구분	일시	장소	참가팀	
			인원(명)	팀
1회	2007.09.29.(토)	용인 퓨처리더십센터	114	6개 지방회 총 6개팀 - 서울A, 서울B, 경기중앙, 광주, 울산(대구), 대전
2회	2008.09.27.(토)	김천시 김천종합운동장	146	6개 지방회 총 7개팀 - 서울A, 서울B, 인천, 경기중앙, 대전, 울산, 광주
3회	2009.10.10.(토)	김천시 김천종합운동장	158	6개 지방회 총 7개팀 - 서울A, 서울B, 경기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회	2010.09.11.(토)	김천시 김천종합운동장	160	7개 지방회 총 7개팀 - 서울, 경기중앙,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바둑대회

구분	일시	장소	참가팀	
			인원(명)	팀
1회	2000.08.20.(일)	한국기원	67	10개 지방회 총 13팀
2회	2002.01.07.(월)	유성 리베라호텔	30	13개 지방회 총 15팀
3회	2008.05.31.(토)	한국기원	57	8개 지방회 총 11팀
4회	2010.08.14.(토)	한국기원	51	7개 지방회 총 9팀

나. 지방변호사회

1) 서울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낚시	비정기
바둑	비정기
테니스	매주 금요일 19:00~22:00
사진	봄, 가을(연 2회)
마라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산사랑	특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 정기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태광골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축구	매주 토요일(경기가 있을 경우)
미술연구	봄, 가을 스케치대회
영어연구	매주 목요일 19:30~21:00
일어연구	매주 월요일 18:00~19:30
중국문화	매주 화, 목요일 18:00~19:30
베트남법률문화연구	초급 : 화, 수요일 18:00 / 중급 : 월, 화요일 20:00

동호회 명	모임
클래식음악	비정기
법조원로회	비정기
풍물동호회	매월 둘째 · 넷째 주 수요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2) 경기북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등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주간 산행 / 매주 월요일 18:00 야간 산행 (매년 봄, 가을 변호사회 주관 회원친선등산대회 개최)
골프	매월 넷째 주 월요일 골프대회 개최 (매년 봄, 가을 변호사회 주관 회원친선골프대회 개최)
축구	매월 둘째 · 넷째 주 토요일
여성변호사 친목모임 '송백회'	오페라 등 문화행사 비정기 관람

3) 인천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축구	비정기
바둑	부천지역 개업회원 대상 매년 개최
볼링	부천지역 개업회원 대상 매년 개최

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축구	매달 2번씩 정기 연습 / 지역 내 축구인들과 부정기적 경기 개최 매년 요코하마변호사회 축구팀과 축구시합
골프	매월 셋째 주 월례 대회 개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변호사회 주최 골프대회 개최
등산	춘계 및 추계 등산대회 개최
바둑	매년 말 법조인 바둑대회 개최
기타	기타 마라톤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등이 비공식적으로 활동 중

5) 충북지방변호사회

행사명	모임
변호사대회	매년 여름 1박 2일간 가족 동반 연수
법조바둑대회	매년 상 · 하반기 법원, 검찰, 변호사회 바둑애호가 대상 개최
등산대회	매년 사무직원회와 변호사 회원들과 춘계 등산대회 개최
골프대회	매년 친선대회 개최

6) 대전지방변호사회

행사명	모임
조별연찬회	2007년부터 매년 1~2회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의견수렴을 위해 1조 15~16명씩 조별 연찬회 실시
등산대회	1999년부터 매년 실시
골프동호회	회원 20여 명
축구동호회	회원 16명
바둑동호회	회원 20여 명
기타	일본법문화 동호회, 중국법 동호회 활동 지원

7) 대구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저스티스 축구단	-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스포츠교류를 위하여 2000. 4. 29. 저스티스축구단을 창단, 매년 친선축구시합 개최 - 법원, 검찰청, 언론기관 등의 소속 축구동호회 등과 활발한 축구교류 - 회원 30명
법우회	- 골프를 통한 친목도모 - 회원 39명,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정기모임
사토회	- 골프를 통한 친목도모 - 회원 33명,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모임
일타회	- 골프를 통한 친목도모 - 회원 12명, 매월 정기모임
포항·경주·영덕변호사골프회	- 포항, 경주, 영덕 변호사들의 골프를 통한 친목도모 - 회원 20명,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모임
기우회	- 바둑을 통한 친목도모 - 회원 30명, 수시 정기모임
사진동호회 빛으로	- 사진 촬영을 통한 친목도모 - 회원 20명, 분기별 강좌 및 출사

8) 부산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바둑대회	2009.11.21.(토) 10:00, 부산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
독서	수시 모임

9) 경남지방변호사회

동호회 명	모임
등산회	매월 1회 개최, 정규가입회원 및 당일 희망회원 참석

10) 광주지방변호사회

행사명	모임
야유회	• 봄 : 하루 일정 등산행사 • 가을 : 1박 2일 일정 가족동반 국내외 단체여행

11) 전북지방변호사회

행사명	모임
가족동반답사	매년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는 답사를 1~2회 시행
변호사골프회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
변호사족구회	매년 정기적 활동, 결식아동돕기와 연계하여 활동

12) 제주지방변호사회

행사명	모임
골프대회	연 4회 개최

7. 대한변호사협회 간행물(2005년 이후 주요 간행물)

가. 비정기 간행물

분야	발간년도	제목
인권	2006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한국변호단 활동보고
	2006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매뉴얼
	2007	출입국 단속·보호 과정상의 인권친화적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2007	북한 인권 관련 법령해설
	2007	진료현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인권
	2007	빼앗긴 봄 황사의 인권침해적 문제
	200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과 그 운영방안 자료집
	200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지침서
	2008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매뉴얼
	2009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과 합리적 운영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09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 자료집
	2009	일제피해자 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09	노인법률상담 사례발표 및 노인복지관종사자 교육 자료집
	2009	제1회 인권문제대회 작품집
	2010	제1회 인권환경대회 자료집
법률 일반	2005	북한법 조찬 포럼 자료집
	2006	경영판단의 원칙 토론회 자료집
	2007	통일문제연구 자료집
	2007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연구보고서
	2007	시민법률학교 자료집
	2007	법이란 무엇인가(시민법률학교 교재)
	2007	법조인의 길과 로스쿨(시민법률학교 교재)
	2008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배상에 관한 매뉴얼
	2008	국민참여재판 제도·재판원 제도
	2008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자료집
	2009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토론회 자료집
	2009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세미나 자료집
	20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9	알고 지키면 즐거워지는 법(유치원, 저학년, 고학년용)
	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 자료집
변호사 제도	2005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5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상 토론회 자료집
	200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입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06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에서의 변호사와 소비자의 관계 토론회 자료집
	2006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인증방법 토론회 자료집
	2006	기업 법률서비스의 발전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6	변호사 실무제요
	2007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7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8	기업발전과 법률서비스 선진화 토론회 자료집

분야	발간년도	제목
변호사 제도	2008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백서
	2008	법조인구 증가 문제
	2008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
	2009	판례·선례 변호사법 축조해설
	2009	법학적성시험의 점검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9	유럽 법률비용보험 소개 및 국내 도입문제에 관한 보고서
변호사 교육	2005	공정거래법
	2005	건설관계법
	2005	증권관련 집단소송
	2005	통합도산법
	2006	민사집행, 보전소송, 행정소송
	2006	노동관계법
	2006	금융거래법
	2006	통합도산법
	2007	언론관계 소송의 제 문제
	2007	기업의 인수, 합병의 제 문제
	2007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 문제
	2007	특수불법행위
	2007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2008	2007년도 주요 판례 해설
	2008	가사사건의 제 문제
	2008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건의 제 문제
	2008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
	2008	조세법의 제 문제
	2008	민사집행 보전 소송
	2009	재건축, 재개발
	2009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2009	기업법무 일반
	2009	부동산 소송
	2009	헌법과 헌법 소송
	2009	아동,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자료집
	2009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 자료집

나. 정기 간행물

분야	발간년도	제목	비고
인권	1985 ~ 2009	인권보고서	
북한	2006, 2008	북한인권백서 국·영문판	
환경	~ 2010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일반	2000 ~ 현재	대한변협 신문	주간
	1972 ~ 현재	인권과 정의	월간
	1998 ~ 현재	변호사 징계사례집	현재 4집까지 발간

8.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현황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은 변호사회가 할 수 없는 변호사인 조합원을 위한 금융 및 복지, 공제사업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대원의 금융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가입회원 수 : 1,632명 • 현재 예치금 현황 : 21,961,436,801원

(1) 조합원

- ① 서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그 세대원
- ② 서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2) 사업이용

- ① 최소 출자금 10만 원(대출시 100만 원)을 납입 후 이용
- ② 출자금에 대하여는 매년 배당 실시, 탈퇴 시 전액 반환

(3) 사업의 종류

- ①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 ② 조합원에 대한 대출
- ③ 복지사업
- ④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